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6.

발 의 자 : 조정훈 · 서천호 · 박충권
김미애 · 김장겸 · 김대식
서일준 · 김용태 · 나경원
김민전 · 이상휘 · 임종득
박수영 · 박대출 · 이만희
최수진 · 김기현 · 김승수
김희정 · 서명옥 · 이인선
성일중 · 배준영 · 최형두
조배숙 · 서지영 · 강민국
조경태 · 김소희 · 조지연
유상범 · 엄태영 · 강선영
강대식 의원(3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·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에

규정함. 이와 관련,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.

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,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.

④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62조제1항 중 “제158조제6항제1호”를 “제158조제7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76조제2항 중 “제158조제6항제2호”를 “제158조제7항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8조(사전투표) ① · ② (생략)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“사전투표관리관”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 <후단 신설> <신설>	제158조(사전투표) ① · ② (현재와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. ④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④ ~ ⑧ (생략)	⑤ ~ ⑨ (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
제162조(사전투표참관)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	제162조(사전투표참관) ① ----- -----

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 관하게 하고, <u>제158조제6항제1 호</u>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. ② ~ ⑥ (생략) 제176조(사전투표·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·개표) ① (생 략) ②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는 <u>제158조제6항제2호</u>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 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 에 투표함의 봉합·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----- -----<u>제158조제7항제1 호</u>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76조(사전투표·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·개표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제158조제7항제2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